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3호 중 "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"을 "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 시설 정밀검사" 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"국가기관이" 를 "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" 로 하고

동조 제7호 다음에 "제8호"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"8.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 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할 의뢰한경우"

(별표1)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중 시험종별 란의 공해관계 처리기간 "15" 일 을 "20" 일로 한다.

(별표2) 검사. 시험등 수수료 제5호 식품. 첨가물 및 용기등 시험 중 "수처리제 가 목 내지 바 목"을 삭제하고 동 "수처리제 가목 내지 바목"을 제7호 환경분야에 관한시험중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란 다음에 "신설" 한다.

동표 제7호 환경분야에 관한시험 구분 란 정상시험 중 "건도오" 를 "전도도" 로 정정한다.

동표 제7호 환경분야에 관한시험 중 음용수중 정량시험 ◦ 트리클로로에틸렌 4,000 뒤에 다음과 같이 "신설"한다.

구 분	수 수 료	비 고
○ 알루미늄	4,000	
○ 디클로로메탄	4,000	
○ 벤젠	4,000	
○ 불루엔	4,000	
○ 에틸벤젠	4,000	
○ 크실렌	4,000	
음용수중 정성시험 (1항목당) (색도, 탁도, 맛, 냄새, PH)	1,30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2 제 7호에 신설된 음용수중 정량시험 수수료징수에 대한 시행시기는 다음표에 의한다.

구 분	수 수 료	시행시기
○ 알루미늄	4,000	'95. 1. 1
○ 디클로로메탄	4,000	'95. 7. 1
○ 벤젠	4,000	'95. 7. 1
○ 톨루엔	4,000	'95. 7. 1
○ 에틸벤젠	4,000	'95. 7. 1
○ 크실렌	4,000	'95. 7. 1